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4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조정(정춘생의원안)	2

I. 개요

1.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5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조정(정춘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 ○ 기준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기준세액의 배분 - 부가가치세: <u>74.7%</u> - 지방소비세: <u>25.3%</u>	☐ 지방소비세율 전환비율 인상 ○ (현행과 같음) ○ 기준세액의 배분 - 부가가치세: <u>64.7%</u> - 지방소비세: <u>35.3%</u>

* 정춘생의원안 2024. 10. 4. 발의(의안번호 4549)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0.0%p 상향조정한 35.3%로 하여 지방세 세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 신설되었음.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현재 「부가가치세법」 1)과 「지방세법」 2)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음.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2)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였고, 이후 지방재정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해 전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었음. 2014년에는 유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³⁾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11%로 인상되었고, 이후에는 재정분권 추진⁴⁾의 일환으로 전환비율의 단계적 인상이 이루어졌음.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되었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22년 23.7%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25.3%가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2010~ 2013년	2014~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
5%	11%	15%	21%	23.7%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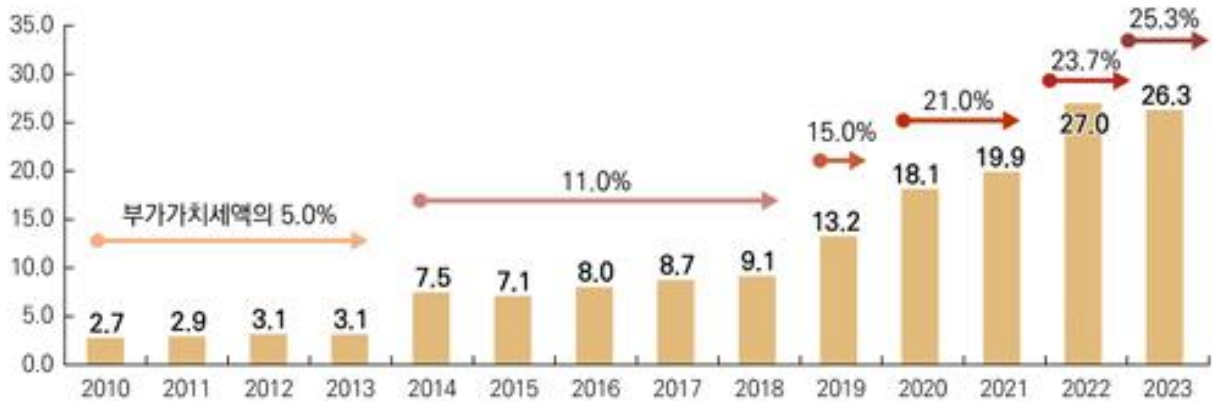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금액은 2010년 2.7조원이었으며, 2014년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11%로 인상되면서 7.5조원으로 증가한 후 수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였던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 9.1조원까지 증가하였음. 이후에도 전환비율 인상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하면서 전환금액은 2020년 18.1조원, 2021년 19.9조원, 2022년 27.0조원, 2023년 26.3조원 등으로 확대되었음.

3)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8월 28일 이후의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취득가액 6억원 미만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함.

4) 2018년 10월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순차적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금액(2010~2023년)]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0.0%p 상향조정하여 35.3%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과 같이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립도⁵⁾는 최근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 49.2%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022년 49.6%, 2023년 48.1%, 2024년 48.6%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통합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frac{(\text{경상수입} + \text{자본수입} + \text{융자회수})}{\text{통합재정수입}} \times 10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통합재정자립도	54.2	53.4	51.3	50.6	49.2	49.6	48.1	48.6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둘째,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증가하면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세수 신장성이란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 세수신장성이 낮은 상황임.

[연도별 지방세 수입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취득세	20.8	21.7	23.5	23.8	24.0	30.0	33.7	27.7	24.3
지방소득세	12.8	13.1	14.4	16.7	17.4	16.9	20.0	24.3	22.9
재산세	9.3	9.9	10.7	11.5	12.7	13.8	15.0	16.3	14.9
자동차세	7.1	7.6	7.8	7.9	7.7	8.1	8.4	7.3	7.3
지방소비세	6.0	6.4	7.3	7.5	11.4	16.6	17.8	24.0	24.7
지방교육세	5.8	6.3	6.4	6.5	6.7	7.1	7.6	7.5	7.0
담배소비세	3.0	3.7	3.6	3.5	3.4	3.6	3.6	3.6	3.6
등록면허세	1.8	1.7	1.6	1.7	1.8	2.1	2.2	1.9	2.0
주민세	1.5	1.8	1.9	2.0	2.1	2.1	2.3	2.5	2.7
지역자원시설세	1.4	1.4	1.5	1.6	1.7	1.8	1.8	1.9	1.8
레저세	1.1	1.1	1.1	1.0	1.0	0.2	0.1	0.8	0.8
기타 ¹	0.4	0.8	0.6	0.5	0.7	0.3	0.4	0.7	0.4
합 계	71.0	75.5	80.4	84.3	90.5	102.1	112.8	118.6	112.5

주: 과년도수입분을 의미하며 일부 연도는 도축세와 도시계획세 수입분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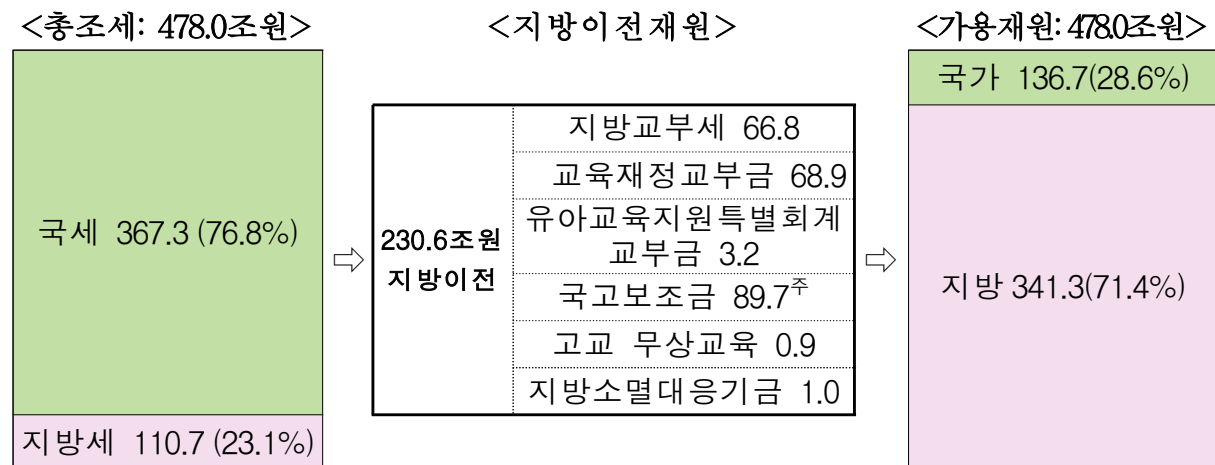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와 지방세 간 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능 이양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국내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3.1%에 불과하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 교부금 등을 고려하면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비중이 총 조세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도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교부금으로 약 55%⁶⁾가 지방에 이전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세 세수를 추가로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국가와 지방의 조세배분과 가용재원 현황(2024년 예산 기준)]



주: 지방보조금(89.3조원) + 교육보조금(0.4조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및 중

6) ①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5.3%), ②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③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79%) →
 ①25.3%+74.7%×(②19.24%+③20.79%) = 55.2%

장기 세수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및 세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세이양으로 중앙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넷째, 지방세 세원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할 때 지방세 자주재원의 확대가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